

참고자료

'24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

주요 질의응답

2024. 1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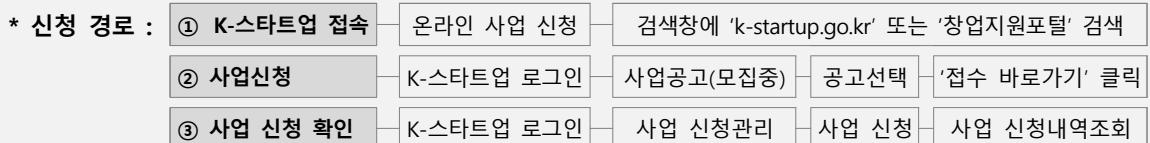
[사업 신청 및 문의처]

1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답변

- ☞ 사업 신청은 K-스타트업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. 사업 신청 완료 여부 확인은 K-스타트업 누리집 → '사업 신청관리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* (참고) 사업 신청을 위해 K-startup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. 해당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, 접수 마감일 이전에 회원가입 진행을 권장드립니다.

참고
사항



2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변

- ☞ 불가합니다. 사업 신청은 K-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 사업 신청 접수는 **16:00 정각**에 종료됩니다. (신규 신청 불가). 다만, 16:00 전에 1단계(약관동의)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18: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가능합니다.

3 업무 담당자 ID로 사업을 신청해도 되나요?

답변

- ☞ 불가합니다. 사업 신청 시에는 반드시 **대표자가 본인 ID**를 통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.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, 평가대상에서 제외,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4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도 사업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?

답변

- ☞ 신청해야 합니다.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온라인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, 모집 공고문상의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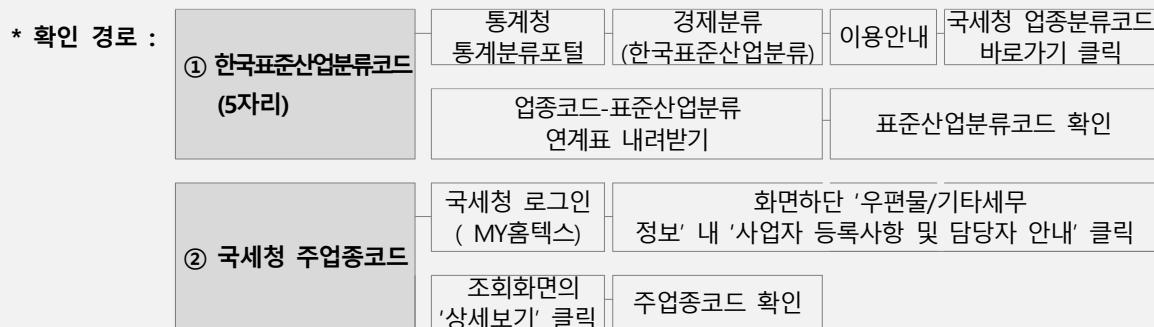
5

이종업종과 동종업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?

답변

- ☞ 이종·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(5자리)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 '세세분류→일치 시 동종업종', '세세분류→불일치 시 이종업종'으로 판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
사항



6

사업 신청 시 과제명은 무엇을 쓰나요?

답변

- ☞ 사업 아이템을 기입하시면 됩니다. 과제명은 창업 아이템(제품)이 한눈에 표현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* (예시) OO기술이 적용된 OO기능의(혜택을 제공하는) OO제품·서비스

7

사업 신청 시, 아이템이 기술 간 융복합으로 인해 단일 기술 분야를 선택하기 어려운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답변

- ☞ [전문기술분야]에서 신청하고자 하시는 창업아이템(사업)과 가장 근접한 기술 분야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.

8

소속 직원이 없는 경우, 사업 신청 시 인력정보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?

답변

- ☞ 소속 직원이 없으신 경우 공란으로 두시고, 저장 → 제출 완료를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

9

개명한 이름으로 실명인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☞ 개명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 해당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화면에 표시된 이름이 개명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답변

☞ 위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실명인증을 연계하는 SCI평가정보(1577-1006)으로 유선 연락하여 시스템에 개명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정정요청하여 정정이 완료된 이후에 실명인증을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(참고) 실명인증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☎(국번없이)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.

10

주관기관은 1개만 선택해야 하나요?

답변

☞ 네, 그렇습니다. 신청자 본인이 사업을 수행할 **주관기관 1개**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·접수 마감 이후에는 주관기관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.

11

사업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(예정), 거주지역 이외의 주관기관을 선택해도 되나요?

답변

☞ 네 가능합니다. 사업장 소재지(예정), 대표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주관기관 선택이 가능합니다. 주관기관 선택 시 모집공고와 함께 게시된 [별첨 3] 주관기관 소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2

사업 신청 기간 중 주관기관 변경이 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주관기관 변경은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. 접수 마감 후에는 주관기관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.

* (참고)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의 신청 주관기관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K-Startup 누리집 접수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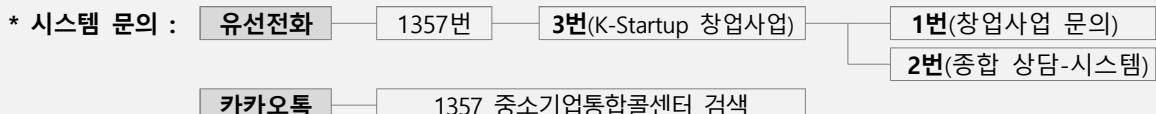
13

사업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?

답변

☞ 시스템과 관련한 문의는 ☎(국번없이)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해주시기 바라며, 사업별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문의는 모집 공고문에 기재된 유선 또는 K-스타트업 상담하기 등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사항



14

K-스타트업에서 상담하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
답변

☞ K-스타트업 접속 후,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신청자가 직접 글을 작성하면, 해당 질의 사항에 대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확인 후 답변을 드립니다.

참고
사항



15

사업 지원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. 해당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?

답변

☞ 사업설명회는 공고문의 [붙임 2]의 일정에 따라 주관기관별 1회 이상 진행될 예정입니다. 사업설명회에서는 예비창업자 모집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 외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, 모집공고에 기재된 유선 또는 K-스타트업 상담하기 등을 통해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6

사업 신청과 관련한 시스템 매뉴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K-스타트업 누리집 접속 후 고객센터에 있는 온라인 매뉴얼 탭에서 「창업 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(PMS) 사용자 매뉴얼」 확인이 가능합니다.

* (참고) 사업 신청 전, 시스템(PMS) 이용 매뉴얼 숙지를 권장드립니다.

참고
사항



본 사업의 절차, 운영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?

답변

☞ K-스타트업 누라집 접속 후 알림마당에 있는 공지사항 탭에서 「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사업 신청 전 지침에 명시된 창업기업 의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
사항

* 경로 : [K-Startup](#) → [고객센터](#) → [자료실](#) → [‘통합관리지침 검색’](#) → [‘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\(제11차\)’ 다운로드](#)

[신청자격]

1

현재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되어 있는 경우,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변

- ☞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,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유무를 확인하므로 공고일 이후 전액 변제하여도 사업 신청은 불가합니다.
- * (참고) 임금 채불사업주 해당 여부는 '고용노동부 누리집(<https://www.moel.go.kr>) 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
사항

* 경로 : 고용노동부 누리집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명단공개 → 체불사업주명단조회

2

개인적인 채무가 있어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변

- ☞ 채무의 경우, 신청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(기업)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접수마감일('24.2.21.)까지 아래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참고
사항

* 예외사항 :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예외 대상

-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
-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-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
-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 · 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 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(기업) 예외 대상

-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
-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-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3

신규 계좌개설 등 은행거래가 불가능합니다.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불가합니다.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계좌) 개설과 창업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4

사업 신청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?

답변

☞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. 다만 사업별로 자격요건이 다르니 사업신청자격 세부 정보는 모집 공고문의 신청 자격 및 요건 항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5

외국인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가능합니다. 법무부 출입국,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(외국인 등록증 재외국민거소증 등)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시 실명 인증이 가능합니다. 단, 거주지가 외국인 경우 사업 완료를 위해 필요한 의무 사항 이행 가능 여부를 재확인 후 사업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

현재 R&D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데,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가능합니다. 연구개발사업은 창업지원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동 사업의 신청과 수행이 가능합니다.

7

과거 해당 사업에 신청하였고, ‘탈락’ 통보를 받았습니다. 금년도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가능합니다. 과거의 사업 신청 이력이나 탈락 사실이 사업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8

과거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, 지원을 받은 기업입니다. 금년도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불가능합니다.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았다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
9

공고문의 신청 제외 대상에서 명시하는 ‘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, 타 중앙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참고
사항

* 확인 경로 :

K-startup
홈페이지접속

사업공고

모집 중 클릭

중간 좌측 검색 네모박스에 ‘통합공고’
입력 후 검색적용 클릭

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
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
(등록일자 24.1.3.) 클릭

공고문(한글) 4~11페이지 참고

10

본 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기관 00대학교의 경직 인력입니다.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불가합니다.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.

11

창업지원사업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가능합니다. 다만 협약 기간이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 동시수행이 불가합니다. 따라서 동시 선정된 경우, 먼저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가능하오니 협약체결 전 반드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, 사업비 환수 등 제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* (참고)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등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.

12

'23년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 중입니다. 협약 기간 종료일이 '24.1월을 넘어가는 경우인 사업에 신청 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가능합니다. 참여하고 계신 사업이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협약 시작·종료일 및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
13

'24.1.10.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 해당합니다. 금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불가능합니다.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('24.1.1.~1.30.)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(해산 및 청산) 이력이 있으실 경우 금년도 사업 신청은 불가합니다.

[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]

1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한글 문서(HWP)로 작성해야 하나요?

답변

- ☞ 아닙니다. 워드(Microsoft Word)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모집공고문과 함께 안내드린 동 사업 전용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그 외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,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(주의) 전년도 사업계획서, 타 사업 사업계획서, PPT 양식의 사업계획서 등은 제출 불가하며,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 사업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나요?

답변

- ☞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은 15쪽을 넘지 않아야 하며, K-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(30MB)이 제한됨에 따라 최대 업로드 용량 이내에서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

3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한글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해도 되나요?

답변

- ☞ 사업계획서는 한글(HWP) 파일로 제출하시면 PDF 형식으로 자동 변환됩니다.

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이미지를 삽입해도 되나요?

답변

- ☞ 사진, 표, 그래프 등 모두 삽입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사업계획서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용량(30MB)이 제한되어 있으니 고화질의 사진을 과도하게 삽입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.

5 현재 제품(서비스)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. 제품(서비스)가 개발 중이어도 사업계획서 3페이지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나요?

답변

- ☞ 제품(서비스)을 개발 중인 경우, 설계도나 완성된 제품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으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
6

'23년에 타 창업지원사업 수행 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 → 신청해도 되나요?

답변

- ☞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, 신청하신 내용이 타인의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다면, '자격요건 검토' 단계에서 시행하는 '사업계획서 중복률 검토 단계'에서 탈락됩니다.

7

사업계획서 양식을 변경해서 제출해도 되나요?

답변

- ☞ 사업계획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. 모집 공고문과 함께 안내 드린 사업계획서의 목차, 세부 항목을 임의로 변경 및 삭제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,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8

가점 대상자인 경우,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?

답변

- ☞ 가점 대상자일 경우, K-스타트업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한 사업 신청 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. 모집 마감일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
※ (참고) 가점 세부 항목은 본 모집공고 상의 '평가 및 선정'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사업비]

1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
답변

- ☞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기준(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)으로 계상하며,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근로 시간 정보시스템(<http://www.wage.go.kr>)의 업종별·직급별 평균·연봉을 참고하여 '사업비 집행계획'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.

2 선정 전 집행한 인건비를 협약체결 이후 소급받을 수 있나요?

답변

- ☞ 불가합니다. 사업화 자금은 협약 기간 내 주관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사업비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.

3 사업비 집행 비목 중 비목 간의 비율도 정해져 있나요?

답변

- ☞ 그렇지 않습니다. 비목 간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필요성, 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.

4 사무실의 서랍, 책상 등을 정부지원사업비로 구매가능한가요?

답변

- ☞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, 가구, 기구 등은 사업비 집행이 불가합니다. 단, 시제품을 개발,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일부 공정을 외부업체에 의뢰·제작하는 비용 등은 집행이 가능합니다.

5 정부지원사업비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?

답변

- ☞ 가능합니다. 협약체결 이후에 4대 보험에 가입된 기존, 신규고용 인력 모두에 대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.

6

사업 수행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 회사 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불가합니다. 사업비는 협약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협약종료 후에는 잔여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반납하셔야 합니다.

7

대표자의 자녀 인건비를 정부지원사업비로 집행 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불가합니다. 창업기업 대표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소속직원의 경우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.

8

제품 광고비를 정부지원사업비로 집행 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가능합니다. 협약 기간 내에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등은 집행이 가능합니다.

[평가 · 선정]

1 신청을 완료했습니다. 평가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?

답변	☞ 서류평가, 발표평가 결과는 단계별 평가 종료 후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신 주관기관에서 개별 안내(문자 또는 이메일)를 드립니다.				
참고 사항	* 평가절차 :	① 요건검토 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	▶ ② 서류평가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	▶ ③ 발표평가 프로그램 적정성 등 발표 (30분 이내)	▶ ④ 최종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확정

2 서류평가 결과 발표 후, 발표평가 준비 기간은 얼마나 부여되나요?

답변	☞ 서류평가 결과 발표 후, 발표평가 준비 기간을 7일 내외 범위에서 부여할 예정입니다. 또한 발표 자료(PPT 등)는 별도 양식이 없으니, 필요에 따라 준비한 후 제출 기한 내 발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	---

3 정부지원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?

답변	☞ 정부지원사업비는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및 창업아이템 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. 다만 신청하신 사업비를 초과하여 최종 사업비가 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---	--

4 평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?

답변	☞ 불가합니다. 접수 마감일 이후 사업계획서 수정은 불가합니다.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발표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---	--

5 서류평가 점수가 발표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?

답변	☞ 서류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발하며, 발표평가를 통해 취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선정자가 결정됩니다.
----	---

6

평가는 누가하나요?

답변

- ☞ 주관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검증한 다수의 평가위원이 선정평가 가이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.

< 평가위원회 후보단 자격기준 >

1. 산업계
 - 가.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
 - 나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
 - 다.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
 - 라.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사람
2. 학계 :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
3. 연구계
 - 가.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
 - 나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
 - 다.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
4. 공무원 경력자 :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사람
5. 기술사, 변리사, 기술지도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
6.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이 있는 사람
7. 그 밖에 지원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후보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
7

평가 기준이 있나요?

답변

- ☞ 평가는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(팀) 구성 및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 평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공고문의 '평가 및 선정'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8

대표자가 부재중인 경우, 발표평가에 타 직원이 대신 발표할 수 있나요?

답변

- ☞ 불가합니다. 발표평가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. 대리평가 방지를 위해 평가 전 인적사항 확인 및 신분증 얼굴 대조 등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9

특허 등 핵심기술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 등을 통해 유출될 가능성은 없나요?

답변

- ☞ 평가를 시작하기 전 모든 평가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의무로 작성하며, 주관 기관별 평가위원 사전교육, 평가장 내 사진촬영, 사적통화 금지 등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보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.

[기타사항]

1

부동산임대업 보유자 증빙서류 중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이 안됩니다.

답변

- ☞ 1인 사업자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 시 증빙서류로 ① 사업자등록증,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기업명으로 직장가입자 이력이 없어야 신고요건 충족)